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21. 03.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부정행위를 말하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교 및 연구자는 제2항내지제7항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1. 위조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함)
- 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 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연구비수주, 자료수집, 연구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나.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한다.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

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④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1.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상기 1~2목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본교에서 수립·시행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내지제68조의 벌칙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벌칙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
[전문개정 2023.02.01.]

제3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10.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나.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 연구자는 학술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본교는 연구자의 부실학술지 투고나 부실학술대회 참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2.>

제6조 (연구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 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제8조 (기본의무)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대학 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심사윤리

제10조 (심사의 공정성) 본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계획서 선정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본교 구성원은 심사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상충

제12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제13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대상의 보호 [장 신설 2023.02.01]

- 제14조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인간대상 연구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③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⑤ 연구대상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⑥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⑦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연구자가 상기 1~3 호에 해당하는 인간대상 연구,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

으로 연구, 그 밖에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공용위원회 e-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02.]

제15조 (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2.01.>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